국제화에 대비한 지구환경 측면에서의 경제적 정책동향

박재주 / 본협회 사무총장

(4) 가격정책

정부는 시장가격과는 다른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소비자 및 제조업자의 행동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격이 낮게 설정되면 소비에 대해서는 촉진적으로 움직이지만 만약 가격이 비용보다 하회하여 설정되면 생산 및 투자에 대해서는 억제적으로 움직인다. 반대로 가격이 높게 설정되면 소비가 억제되고 특히 이윤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생산 및 투자는 촉진된다. 이와같이 가격정책은 거의 확실하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낳게 된다.

이러한 양쪽 가격정책의 효과는 환경대책만이 아니라 에너지 산업에서도 볼 수 있다. 예를들면 북미에서는 1980년대 까지는 천연가스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고, 또 일본에서는 일반적인 석유제품(특히 등유)의 가격이 낮게 억제되어 있다.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장기에 걸친 가격설정의 결과, 북미에서는 공급부족 및 과잉사이클을 불러 일으키고 있고 현재 간신히 그 영향에서 벗어났다. 반대로 석유가격은 개별국가에 따라 또 세계시장에서도 정기적으로 원유의 한계비용 또는 자원비용을 상회하여 설정되어 왔다. 이와같은 가격설정은 반드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낳게 한다.

정부에 의한 가격설정 대신에 가격결정을 시장에 맡길 수도 있다. 이 경우 정부의 정책은 가격을 완전히 시장에 맡겨 그 결정과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러한 시장가격은 예를들면 배출권구상과 같이 부담금과 세제와 같은 시장개입에 의해 규제가 없다면 자유로이 이용가능한 재화의 가격을 효율적으로 설정하고 또 그 재화의 거래시장을 창설한다는 외부불경제비용의 내부화를 반영한 것이 된다.

이와같이 효율적인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가격을 반영한 것이든지, 또는 환경자원의 소비와 파괴에 대한 가상가격(proxy price)이다. 희소하고 귀중한 "깨끗한" 환경자원에 관해서 가상가격을 사용한다는 것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공자원에 대해서 시장원리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출부담금, 허·인가요금, 또 배출권이라는 것은 환경자원의 소비에 대한 가상가격설정의 예이다. 가상가격은 또 보전 또는 오염에 관한 소위 지불의욕("willingness to pay")에 의거한 것이다.

환경보전비용을 내부화하는 것 같은 투명하며 효율적인 가격설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산업계의 협력이 필요하다. 오염과 같은 외부불경제비용을 내부화하는 듯한 가격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경제활동 및 문제가 되어 있는 사회적 목표 비용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 의해 정부는 취할 수 있는 정책과 비용 및 그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할 수 있다. 물론 비용과 가격은 정확하게는 계산할 수 없지만 선택이 분명하고 가격이 단순할수록 결정

된 정책은 효율적이다.

가격시스템 속에서 외부경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복과정이 필요하다. 외부경제는 본래 그 정의에 의해 제조업자의 가격결정범위외에 있어 통상은 정부의 개입에 의해 그 과정 속에 도입해야 하는 것이다 그 과정은 결코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니다. 시장가격은 경제적 가격을 신중히 한 경우에도 모든 환경자원의 소비에 대해서 설정된 것이 아니다. 이 불완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염방지, 고에너지 효율공정과 설비, "깨끗한" 에너지기술과 신소재·신공정기술 등의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과 환경자원의 가치에 대한 시장의 창설과 가격설정을 보강하기 위한 기준과 규제라는 정책수단이 경제적 수단과 함께 자주 채용되게 된다.

(5) 기준 및 규제

기준 및 규제는 정부에 의해 또 산업계 자신에 의해 설정된다. 그 목적은 산업계에 대해서 허용된 행동을 나타내고 또 일반적으로 참고가 되는 지표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목표가 되는 기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건설자재의 표준화와 석탄·석유의 격을 매기는 것 등은 자주적 기준의 예이다. 또 일반적으로 강제력을 갖지 않지만 제품과 기업행동에 관한 정부에 의한 지도와 정부와 산업계간의 약속처럼 가이드라인과 자주 규제라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제조기술과 품질을 명기함으로써 기준은 제조업자에 대해서 또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거나 넓히거나 함으로써 구입가능한 제품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기준은 어떤 제품과 사업이라도 설령 그 제품과 사업이 투입물을 지정하거나 공정을 개량하는 등(이것은 반드시 비용증가와 연관되지 않는다) 이미 그 기준을 만족시킨 경우도 있다. 또 반대로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로 그 제조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른 비용을 강요함으로써 기준은 다른 기준체계를 전제로 한 제조업자의 비교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기준은 정부 또는 산업계에 의해 제한된 시장에서 경쟁을 배재하거나 거래를 제한하거나 하는 것에 이용된다.

기준 및 규제는 또 예상할 수 없는 효과와 부작용을 동반한다. 미국의 공익사업규제법 "Public Utility Regulatory Act"은 조그만 독립된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장해를 뺀 것을 그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천연가스화력에 의한 중소설비의 설치가 급증하여 재생가능에너지 자원개발의 존재가 희미해졌다. 이러한 시장의 반응은 의도하지 않은 것이었지만 미국의 연료 및 발전시장에서의 상황을 생각하면 반드시 부적정한 것은 아니었다.

기준은 또 신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신규참고인과 신기술의 상품화를 방해하고 있는 비경쟁적인 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준은 그것을 정기적으로 변경하거나 개정하거나 하지 않으면 신기술의 채용을 촉진하거나 현재의 요구수준을 개선하거나 할 수 없게 된다.

에너지효율의 기준과 배출기준은 정책수단으로서 자주 사용되는 것이다. 그 중에는 고효율의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기준의 도입과 변경은 기술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동반한다. 기술이용의 강제는 시장선택(편리성, 가격, 이용비용간의 트레이드오프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과 신기술의 상업화(특히 신뢰성이 높은 저비용의 대량생산)라는 문제의 촛점이 되어 있다. 새로운 에너지 기준과 오염물질의 배출을 삭감하기 위한 기술력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 문제가 다시 주목되게 된다.

기준과 규제는 대단히 효율적이며 또 실시가용이하지만 당초의 기준설정에는 상당한 기술적

지식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준설정은 현재의 경험과 기술을 반영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만약 정부가 그 노하우, 행정스텝, 검증 등 실시에 필요한 노력을 게을리하면 기준이라는 수단은 유효해지지 않고 뜻밖의 결과를 낳게 된다. 또 한번 기준이 채용되면 가이드라인과 자주적 기준이라는 형태에서의 산업계에 의한 협력이 필요해진다. 이미 서술했듯이 기준은 기준을 준수하게 하기 위해서 벌금을 설정하는 등 부담금과 함께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6) 정보제공과 컨설팅

소비와 투자, 생산에 관한 경제적 의사결정과 계속적인 정책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의사결정은 모두 최종적으로는 개인에게 관계된다. 정부가 최종적 수단과 정보제공 등의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 개인의 경제적 및 사회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정보제공 프로그램은 사회경제적 의사결정의 각 단계에 따라서 몇가지 타입으로 나뉜다.

제1타입은 선택의 대상이 된 것의 특성, 비용과 편익 등에 대해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만약 대기오염을 일정한 수준으로 억제하고 싶은 경우에는 유황을 많이 함유한 석탄의 연소량을 줄이거나 국내의 석탄산업을 축소하거나 자동차수송을 억제하거나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정부가 선언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정부에 의한 분석결과에 대해서 일반국민과 산업계에 공표하지 않고 선택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같이 하여 정부는 선택에 대해서 명확히 하면 동시에 의론과 타협을 피할 수 있다.

제2타입은 한번 정책에 관해서 합의된 후, 그 정책을 유지해가기 위해서 흔히 활용되는 정부의 정보제공 프로그램이다. 정부제공 프로그램의 종류로서는 트레이닝, 제품의 라벨, 선전광고, 팜플렛 등이 있다. 정부는 일반에서 유포하지 않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에 의한 정보제공이 없다면 소비자는 solar system의 존재와 장점을 알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또 산업계도 오염방지설비와 보다 효율이 좋은 신설비와 신기술에 대해서 알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정보는 본래 민간부문의 영역인데 일반인의 이익과 연관된 산업정보의 보급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가 그것을 보완하게 된다. 정부는 또 산업계에 대해서도 더욱 정보를 보급시키려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정부자신이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제품과 기술에 관해서 객관적인 비교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대신에 규제라는 형태에 따라 인정시험과 제품보증을 의무로 정할 수 있다. 제품사용자에 대해서 제품마다의 에너지 소비량을 알리는 것은 OECD 가맹국 간에서는 일반적이다. 예를들면 서독,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및 노르웨이에서는 환경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게 된 이후 「에너지효율표시」에 덧붙여 「환경표시」("Eco-label")이라는 표시가 도입되어 있다.

정부에 의한 트레이닝프로그램도 에너지소비관리를 개선하거나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의 설계 등을 촉진하게 된다. 트레이닝과 검사는 대단한 비용이 들지만, 이것은 산업계에 맡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계 자신에 의한 프로그램은 특히 정책목적이 인간의 이해와 상반되는 경우에는 정책목적을 실현하는데 불충분한 것이 된다.

정보제공프로그램은 산업계와 소비자의 경제행동원리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대단히 좋은 기능을 하지만 이것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에 대해서 각종 제품의 장점과 그 비용, 또 그 대체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가 특정정책을 실시하며 또 특정한 행동을 관리하려고 하는 경우, 정보제공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정책수단이다. 한편 만약 정부가 보다 직접적으로 또 보다 설득력을 갖고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면 정보제공프로그램에 덧붙여 직접적인 시장개입이 필요해진다.

경제효과

이상은 환경보호를 위해서 채용되는 정책수단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이 정책중 어느 정책을 취한다고 해도 제조업자의 비용에 영향을 주어 최종적으로는 기업의 행동과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정부개입은 시장원리에 따른 것이든 그렇지 않든 간접적으로 경제전체의 비용 및 편익을 변화시켜 경제성장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앞에서는 정부개입의 미시경제에의 효과, 즉 오염원을 발생하는 산업계의 행동에 촛점을 맞췄다. 여기에서는 정부개입이 거시경제에 주는 일반적 효과에 대해서 의론한다. 개입의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효과는 비용변화의 함수이다. 개입에 따른 비용변화에 대응하여 공급, 수요, 투자, 소비, 고용수준이 변화한다. 본절에서는 규제 또는 후생에 관한 경제이론을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기본적 관계에 대해서 일반화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아무리 신중히 검토된 것이라도 정부개입에는 비용이 따른다. 이들 비용은 시행시의 문제외에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과 거래의 왜곡(시장의 실패) 등의 경제적 비효율성에 의해 발생한다. 시장에서의 정부개입은 예측되는 이익이 비용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실행된다. 여기에서는 요구되는 환경보전레벨이 이익이다. 비용 및 이익간의 트레이드오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에서의 문제점은 주로 계측에 관계된 것이다. 경제 및 거래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치화 할 수 있지만 환경수준등의 이익은 애매하며 더구나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만약 개념이 정의된 경우라도 특정한 환경자원의 가치에 대해서 합의를 얻는 것과 환경보전수단의 이익을 수치화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정부개입이 정책결정과 경제정책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행해지는 것에서 이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다.

만약 정부개입이 비교적 소규모이며 제조업자와 소비자에의 영향이 작은 경우에는 경제전체에 대한 영향도 작고 대부분 계획으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다. 특정한 에너지제품에의 과세는 세수입을 증가시키지만 행동(경영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거의 없다. 반대로 행동을 변화시킬 정도의 효과적인 정부개입은 경제전체에 대한 효과도 크다.

여기에서는 각종의 정부개입이 주는 일반적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촛점을 맞추려고 한다. 그러나 특정한 시장개입에 대해서 그 상세한 비용편익 분석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정량적 분석은 그 정책이 취해진 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의해 달라지는 것에서 국가에 따라서도, 정책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1) 정부개입의 비효율성으로 생기는 비용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는 듯한 부담금 등은 비효율이므로 만약 시장이 어느정도 효율적인 경우에는 재정정책은 이상적으로는 세수입을 재분배하는 등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행동에 영향을 주거나 환경보전을 포함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세제를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중립적인 경우는 특히 희박하다. 이러한 비효율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지불의무의 면세처분을 포함하여 세제는 거의 정부가 즐겨쓰는 수단이다. 이 면세처분에는 석유 및 가스의 면세상각제도와 자원개발수입에 대한 법인소득세율인하 및 투자감세등이 있다.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데에는 대상이 되어 있는 상품에 대한 소비세가 자주 이용되는 수단이다.

정부는 또 세수입 전체의 레벨을 변화시키지 않고 행동(경제활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것은 나중에 서술하는 소득의 이전을 낳게 된다.

계획에 따른 비효율은 주로 대상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 세제는 정부수입을 증가시킬 목적만을 위해서 이용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세제는 연료유가 아니라 가솔린 등과 같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것으로 세수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광범위한 tax base를 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에게 tax base가 넓은 만큼 시장을 왜곡하는 정도도 적어진다.

세가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주는가는 에너지소비세의 예에서 확실하다. 에너지가격을 상승시키는 듯한 소비세는 소비량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정부에 수입을 가져온다(다른 세제가 일정한 것이 전제). 그러나 최종소비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에 의해 소비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받아들이는 도매가격(판매가격에서 제조비용을 뺀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는 영향하지 않는 것에서 소비세의 공급사이드에의 영향은 작고 또 time lag를 동반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최종소비단계에서의 세금은 과세된 연료로 되지 않은 연료의 소비와 연료와 다른 상품의 소비, 또 소비와 저축간에서의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시키게 되어 가격을 상승시키는 듯한 다른 개입수단과 마찬가지로 비효율을 낳는다. 수요의 감소 및 연료과세에 의한 비용상승에 따라서 관련된 산업계에서는 생산, 고용 및 투자수준을 떨어뜨리게 된다. 또 연료세는 만약 세율이 높은 경우에는 인플레이나 때로는 금리 상승에도 연관된다. 이것에 대해서 소비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역방향과 같은 효과를 낳게 된다.

이상과 같이 세제는 외부불경제의 비용을 내부화하거나 외부경제를 실현시키거나 하기 위한 것에 유의했으면 한다. 이러한 세제의 실시가 성공하는 한은 세제는 수요와 공급의 메카니즘에 대해서는 아주 동일하게 작용하지만, 시장의 왜곡과 비효율에 관해서는 그것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감소시키게 된다.

오염물질처리와 사용료 등 서비스에 대한 부담금은 제조비용을 상승시켜 소비가격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비용상승은 대상이 되는 제품의 생산 및 소비 뿐만 아니라 생산함으로써 산출되는 오염의 레벨도 저하시킨다. 이러한 부담금이 오염물질을 발생하는 활동의 외부불경제비용을 내부화하는 한에서는 제조업자의 사업비용을 사회적 비용과 같은 분량만큼 상승시킴으로써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게도 된다.

보조금과 원조는 제조비용과 소비비용을 변화시킴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양면에서 경쟁적이고 순수한 가격결정 하에서 일어나는 것 보다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정책 수단은 보다 효율적이지만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기업에서 비효율적이지만 보조금을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자금을 이전시키는 등의 결과로서 비효율을 낳게 된다. 보조금이 외부경제를 창출하지 않는 한, 보조금에 의해 만들어지는 투자, 고용 및 소비의 변화는 경제전체에 있어서는 비효율이 된다.

가격지지정책은 생산비용을 상승시키지 않고 국내소비자 및 제조업자에 있어서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그 결과, 효율적인 제조업자는 더욱 이익을 증대시키고 또 비효율적인 제조업자도 이익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투자에 관해서도 보다 효율적인 투자에서 만약 가격지지정책이 없는 경우에는 비효율적이었던 투자에 대해서 투자자금을 이전시키게도 된다. 또 산업계의 구입자도 포함하여 소비자에 있어서는 가격지지정책은 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되고 다른 재화나 서비스에서 생겨야 하는 소득이 감소하여 수요전체가 감소하게도 된다. 게다가 가격지지정책은 어떤 상황하에서는 수출품의 비용을 상승시키거나 싼 경합품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하여 그 나라의 무역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 석유 등 경제적으로 중요한 재화에 대해서 가격지지정책을 적용한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게도 되고 그 재를 투입하는 산업에서는 생산비용을 (해외경쟁기업

의 비용보다) 상승시키기도 한다. 그 결과 인플레이 및 고금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

기준과 규제의 준수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의해 가격과 이익율, 투자결정에 대해서 영향을 주게 된다. 기준은 또 비효율적인 결과와 과정을 강제로 함으로써 효율적인 것의 채용을 막게 된다. 또 사업을 위한 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비효율적인 기업을 폐업에 이르게 하는 등 압박하는 경우도 있다. 기준은 또 비효율적인 결과와 과정을 강제로 함으로써 효율적인 것의 채용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또 사업을 위한 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비효율적인 기업을 폐업에 이르게 하는 등 하여 압박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소비자(와 중간제조업자)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비용의 증가분을 지불하게 되는 것에서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둘러쌀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삭감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 수단들은 비용을 내부화하도록 생각되어 있고 실제로는 시장의 왜곡과 비효율을 감소시킨 것이다.

각각의 지역과 국가의 제조업자가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거나 다른 비용의 존재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무역의 흐름은 보다 효율적이며 순응성 있는 제조업자를 향해서 이동하게 된다. 기준이 그 자체 무역정책수단으로서 사용되는지 어떤지에 불구하고 이 이동현상은 일어난다. 만약 오염방지설비와 보다 효율이 좋은 제조설비 등 기준에 합치하는 듯한 신제품이 개발된다면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거나 산업이 확대함으로서 경제가 성장하고 무역의 확대와 기술혁신의 기회도 생긴다.

시장개입이 효율성에 주는 효과는 이상과 같이 거시경제 및 나라의 무역실속에 반영되게 된다. 만약 비무역재로 가격을 상승시키면 국내의 재화 및 서비스가격 전반을 인상시키게 되어 인플레이션 효과를 낳지만 한편 무역재로 국내가격과 국제가격보다 높게 한다면 수출을 감소시키게 된다. 비효율적인 개입은 이와같이 가처분소득, 저축 및 투자 등 장래의 잠재적 성장력을 삭감해 버리게도 된다. 반대로 외부경제성을 외부화하여 비효율을 고정하는데 성공하는 듯한 시장개입은 때로는 가처분소득의 전체적 증가와도 연관된다.

이처럼 경제의 전반적 효율성을 상승시킬 수 있다면 비무역재 및 무역재 쌍방의 가격을 저하시킬 수 있어 그 나라의 무역수지의 개선에도 공헌하게 된다. 실제로는 경제전체의 성장에 대해서 공헌하는지 어떤지는 간단히 판단할 수 없다. 자원이 생산적 활동이 아니라 환경을 개선하려는 활동에 대해서 배분된다면 전통적인 소득과 후생에 관한 지표는 저하할지도 모르지만 반대로 사회생활은 윤택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계측의 문제이다. "깨끗한" 공기에서 얻을 수 있는 추상적인 편익은 귀중하지만 반드시 국민소득 통계 속에서 반영되지 않는다. 정책입안자 중에는 이 문제를 인식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효과를 보기 위해서 환경자원의 편익을 국민소득 통계 속에 가지고 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자도 있다.

(2) 소득이전 및 무역

시장개입은 관련된 산업 속의 그룹과 부문간에 다른 효과(효율적 효과 또는 비효율적 효과)를 가져온다. 이와같이 시장개입은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한 그룹을 우대하고 다른 그룹을 냉대하게 된다. 행동을 변화시켜 정부의 많은 개입은 반드시 정부가 의도한대로의 방향으로 움직인다고는 한정지을 수 없다. 당초에는 제조업자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비용변화에 의한 부담을 지게 된다. 개입의 효과를 부정하거나 완화하게 하거나 하기 위해서 보조금 등의 정책을 취하면 개입의 효과를 약하게 하게 되고 또 경제의 비효율을 더욱 높이게도 된다.

효율성에 따라 투자, 소비 및 비용을 변화시키는 등 시장이 정부개입에 대해서 반응하면 시장참

가자 간에 소득이전이 생긴다. 이전은 한 개인 또는 그룹에 있어서는 비용이 되지만 비효율성과는 달라 경제전체에 있어서는 손실이 되지 않는다. 예를들면 전체의 세수가 변화하지 않도록 생각된 차별적 세제는 세부담의 이전을 낳게하는 것이 된다. (납세자 클라스 간에 다른 보조금을 준다.)

이처럼 차별적인 세제와 차별적인 세공제는 시민간에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한다. 외부불경제비용을 내부화하는 듯한 부담금은 최종적으로는 제조업자로부터의 다른 부문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래 외부불경제 비용을 부담하고 있던 부문에 대해서 그 소득의 감소분을 보충하려고 하는 것이다. 차별적 세공제와 마찬가지로 보조금은 소득이전과 분배상의 불공평성을 동반하는 것이다.

보조금에 따른 소득의 이전은 일반재원에서 특정그룹으로, 또는 특정그룹에서 다른 특정그룹으로 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가격지지정책도 국내의 소비자에서 가격이 비싸게 유지되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제조업자에 대해서 지불되는 보조금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정책은 적어도 소비자로부터 국내의 제조업자로의 소득이전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큰 이전지출과 소득재분배는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잃어 한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간의 불균형을 포함하여 불이익이 되는 효과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에서 제조업자로, 또 한나라 지역간의 소득이전은 공평성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소득재분배는 또 환경자원도 포함한 공공재에 대한 개인 또는 사회에 의한 평가액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그 효과는 빈곤층과 부유층에서는 다르다. 환경자원의 상대적 가치는 소득액에 따라서도 다르다. 소득의 이전은 정책입안자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문제인 이 차이의 문제를 부분적으로도 악화시키거나 개선시키거나 하게 된다.〈끝〉

※ 참고자료 : 지구환경과 시장경제혁명
(OECD 보고서, 1992)

● 환경관련 행사안내 ●

날 짜	제 목	주 최	장 소
3월 19일	수질관리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토론회	환경과 공해연구회	프레스센타 19층
3/21-26	GLOBE '94 캐나다 벵쿠버 국제환경무역 박람회 및 회의	Globe Foundation of Canada	World Trade Center
3월 25일	대한지하수환경학회 발기 및 창립총회	대한지하수환경학회	서울교육문화회관
3/29~4/4	환경보전캠페인 大 바전회	(사)녹색어머니중앙회	그랜드백화점 7층
4월 1일	배달환경연합 3주년기념식	배달환경연합	프레스센타
4월 4일	제11회 정책토론회	대구사회연구소	경북대 경영대학원세미나
4/7~6/2	제17회 미국학목요 공개강연	한국아메리카학회	서울아메리카센타
4월 13일~5월 4일	폐기물관리 정책의 개선방향	(사)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연구소 강의실
4월 25일~29일	국제환경오염방지기기전 (INPOCO'94)	환경보전협회	한국종합전시장 별관 3, 5실
5/7~5/11	'94동경폐기물처리전 대전지부 참관단	대전충남지부	

■ 이전안내 ■

- 두산개발주식회사
  주소 : (우 131-207) 중랑구 면목 7동 750-7
  TEL : 493-8001
  FAX : 493-8010
-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주소 : 광주직할시 동구 계림동 465-1
  TEL : (062)222-2470
  FAX : 228-4294